

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 
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#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박봉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개정이유

- 2014. 8. 7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,
-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,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의 변경(안 제4조)
-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법조문 개정
  - ~의 규정에 의한 → ~에 따른(안 제1조, 안 제5조)
  - 범위 안에서 → 범위에서, 각호의 1 → 각 호의 하나, 기타 → 그 밖의(안 제3조)
  - 당해 → 해당(안 제5조)
- 「지방세기본법」을 「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6조)

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준용법률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고, 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별회계의 ‘재무회계규칙 준용’ 조항을 삭제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 1부. 끝.